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제동

권익위, 하도급계약 자료 외부 공개 등 관계법령 개선 권고

과 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하도급계약 자료 일반에 미공개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규정 마련
하도급계약 질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불합리	형평성 있는 제재수단과 제재수준으로 처분 규정 마련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실적 저조	발주기관 여건과 특성에 맞는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이행 제도 불합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건·절차 규정 마련
하도급계약 부실검토 감리원에 벌점부과 규정 불명확	부실검토 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편집자주]

【문제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 자료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들만 서로 공유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건설업자들이 과정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부패발생요인이 되고 있다.

【개선안】

하도급계약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사업법」 및 「국가·지방계약법」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설토록 권고했다.

2. 하도급계약 질서·의무 위반자, 합리적 제재 규정 마련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반유형 제재유형	일괄 하도급	미등록 자에게 하도급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위반 하도급	불리한 조건으로 하도급	하도급 계약자료 거짓	하도급 계획서 불이행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6~8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6~30%)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6~24%)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4~16%)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4~16%)	영업정지 (2~3개월) 과징금 (2~3천만원)	영업정지 (3~4개월) 과징금 (4천만원)	과태료 (3백만원)
입찰참가 제한 (국가·지방계약법)	7~13개월	7~9개월	5~7개월	3~5개월	3~5개월	규정없음	규정없음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등 중대한 계약질서 위반을 해도 「국가·지방계약법령」에 제재 규정이 없으며, 개별 하도급 사업 법령에서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서로 달라 제재의 형평성이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가 조장돼 왔다.

【개선안】

건설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자료를 거짓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국가·지방계약법령」에 신설하도록 했다. 하도급계약 의무(거짓·미통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도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각 개별 업종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제재 수단과 수준으

로 규정을 신설·강화하도록 권고했다.

3. 발주기관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공사의 발주기관은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사업에서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설치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발주기관마다 설치·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설치된 기관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거나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해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등 실효성 있고 공정·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구 분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법	전기사업법	문화재수리법	소방시설법
거짓통보자	영업정지(3~4개월) 또는 과징금(4천만원)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과 태 료 (50만~200만원)
미통보자	과 태 료 (100만~150만원)	-	과 태 료 (300만원)	과 태 료 (100만원)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1개월 3차 : 등록취소

【개선안】

발주기관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조기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는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기관에 승인을 얻는 등 변경 요건 및 절차 규정을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문화 하도록 권고했다.

4.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건 등 구체적 규정 마련

【문제점】

건설업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공사 수주를 위한 점수 획득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정작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감리원 등의 검토만 거친 후 하도급계획이나 하수급자를 변경해 하도급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안】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의 공사를 낙찰받기 전에 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추가할 때는 발주

5. 하도급계약 부실검토 감리원에 대한 벌점규정 마련

【문제점】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감리원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은 건설업자와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검토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런 일이 생겨도 벌점 부과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개선안】

공공기관의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 받은 감리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자료의 부실검토 시 벌점 부과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토록 권고했다. Ⓣ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실태〉

구 분	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주시	김해시	LH공사	한국도로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변경공사(대상공사)	224 (294)	10 (13)	46 (46)	2 (33)	27 (30)	14 (14)	10 (12)	56 (68)	24 (24)	23 (38)	12 (16)
변경비율	77%	77%	100%	6%	90%	100%	83%	82%	100%	61%	75%